

2021년 객관식 다중이용업소법 정오표(8.1)

페이지(p)	오(수정 전)	정(수정 후)
p 139 58번 문제	소방청장이 평가대행자에	평가대행자에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(7.6.) 시행 7.13

1. 제9조의6 신설(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)

-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”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·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말한다.
- ②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·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한다.

2. 제15조의2 신설(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)

- 1)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“심신상실자,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 1. 심신상실자
 2. 알코올·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
 3.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, 조현병·조현정동장애·양극성 정동장애(조울병)·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, 뇌전증으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

2)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및 제4항

- ① 동의서(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)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료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소방청장은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영 제15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(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정한다)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3. 제18조의2 신설(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)

-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1.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
 2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
 3.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
-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**30일 이내**에 소방청, 시·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4. 과태료 부과에 개별 기준(별표 6 제2호거목 신설)

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사고 발생 사실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.